

## 칸트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자의 개념

허정훈

(사범대 국민윤리교육과)

### 차 례

1. 서론
2. 행위의 두 측면과 두 요소
3. 의지의 합리성과 법칙
4. 의지의 법칙과 자율
5. 결론

### 1. 서론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자라는 개념은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정의는 도덕적 행위자의 개념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한에서, 도덕적 행위자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는 없지만, 그 정의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도, 그것이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존재를 도덕적 행위자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원론」의 3장에서 도덕적 행위는 이성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는 이성을 소유한 존재이며, 이성이란 독특한 능력이 어떤 존재를 도덕적 존재로, 어떤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도덕성은 오직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이성적 존재자는 도덕적일 수 없게 된다. 칸트는 이 점을 이성없는 모든 존재자의 원인성의 특성에서 찾고 있으며, 그것을 그는 자연적 필연성이라 부르고 있다. 자연적 필연성은 한 존재자의 활동이 외적 원인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연적 필연성 하에 놓여있는 존재자는 오직 그 필연성이 규정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존재자에게 당위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와 같이 비이성적 존재자의 원인성의 특성이 자연적 필연성이라면, 이성적 존재자의 원인성의 특성은 자연적 필연성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런 특성은 자신을 규정하는 외적 원인들로부터 독립해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칸트는 외적 원인들로부터의 독립성을 자유라 부르며, 그것을 이성적 존재자의 원인성 즉 의지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이성적 존재자는 자유의지 능력을 소유한 행위자이며, 그러한 행위자만이 온당하게 도덕적 행위자로 불리워질 수 있다. 동물이나 식물 또는 무생물은 비이성적 존재들이며, 그것들이 비이성적인 한 자유로운 행위자일 수 없고, 그러한 한에서 도덕적일 수 없는 존재들이다. 오직 이성적인 행위자만이 자유로운 행위자이며 도덕적일 수 있다. 그러면 이성적인 존재자는 어떻게 해서 자유로운 존재자이며 도덕적일 수 있는가? 본고는 이런 문제를 고찰하므로써 칸트에게서 도덕적 행위자의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한다.

## 2. 행위의 두 측면과 두 요소

인간의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 두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행위하는 당사자에게 나타나는 방식과 그 행위를 보거나 관찰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식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sup>1)</sup>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마치 심리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건들의 계열로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자연적 사건과 다르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 사건들에 대해 예측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에 앞선 조건들이 파악되거나 알려지면, 원리상 예측가능한 사건으로서 기술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비록 인간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법칙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도, 그리고 발견된 법칙이 기껏해야 개연적인 통계적 수준의 것이라 해도, 더우기 그것을 구체적인 인간 행동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사실적인 자료들이 부족하다 해도, 원리상 인간의 행동은 지구의 자전이나 계절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같이 똑같은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 칸트가 인간의 행동에 대해 이러한 심리학적 관찰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만일 우리가 인간의 결심에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그 근원에까지 탐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없고, 선행 조건에서 필연적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sup>2)</sup>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정확히 예측될 수 있는 사건과 같은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게는 그 행위는 자연적 사건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행위자는 관객에게 보여지는 드라마 속의 고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숙고하고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이다. 물론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행위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숙고 자체가 그가 행하는 특정한 행위를 결정하는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숙고와 행동의 인과 관계는 행위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위를 숙고하는 것이 관찰자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 자신의 행위의 원인 중의 하나라 해도, 스스로 숙고하고 결심을 할

1) L.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 p. 29.

2)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A 550= B 578.

때까지 그런 숙고로부터 일어나게 될 특정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숙고는 무엇을 하게 될지를 모르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sup>3)</sup> 그런 숙고의 내용은 숙고하는 행위가 인과적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선택하도록 이끌게 될 근거나 좋은 이유에 대한 것이다. 행위는 행위자에게 있어 이런 숙고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선택이나 결심의 산물이다. 물론 숙고가 어떤 행위에 대한 일종의 합리화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일어난 행위는 행위자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숙고 자체를 행위의 원인 중의 하나로 포함하는)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심리학적 관찰자의 관점은 숙고하고 행위하는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도 도입될 수 있다. 말하자면 행위자는 자기 자신의 숙고 자체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일반적인 법칙의 한 예로서 인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그런 심리학적 관찰자의 법칙이나 행위 규칙에 의해 원리상 예측되는 행위를 하게 되므로서 단순히 그런 법칙이나 규칙을 확증하게 될런지, 또는 행위자 자신이 그런 법칙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칙이나 규칙에 따를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행동을 할런지를 아는 것은 도덕철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숙고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설명 속에 포함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행위자의 숙고가 그의 행위에 효과적인 심리학적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모두 관찰자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행위자로서는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할 때, 그런 결심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 필요는 없다. 문제는 결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결정과 결심의 근거와 이유들

3) Richard Taylor, *Metaphys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3), p.38.

이다. 행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의 이유들이 건전한가 하는 점이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을 선택하도록 결정하게 만들었는가? 또는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게 만든 원인은 실제로 내가 그러한 것을 행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이런 문제는 행위자로서의 나에게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건전한가라는 문제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는 그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려고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는 원인들이 존재하는가라는 이론적 문제와 아주 다르다. 그런 이론적 예측은 관찰자에게 속하지만, 실천적 결정은 행위자에게 속한다. 물론 관찰자에게는 이런 실천적 결정이 환상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Beck에 의하면, 심리학자가 가지는 그런 (원리상의) 확실성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거나 또는 관찰자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해도, 숙고하고 고려하며 결정하는 경험은, 이론적 관찰자가 아니라 실천적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환상이 아니라고 한다.<sup>4)</sup> 관찰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경험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정하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숙고가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차이를 가져오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외적인 원인에 의해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이런 경험때문에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현상계의 모든 것을 인과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었으며, 인간 행위의 실천적 특성을 그의 도덕철학에서 탐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천적 경험 속에서 행위자는 두가지 서로 다르지만 상호관련된 요소를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한다. 우선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그에 따라 움직여지는 어떤 욕구와 욕망, 소원 등의 충동을 의식한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이런 힘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의식한다. 욕구는 미루어지고 충동은 억제될 수 있다. 물론 어떤 제어할 수 없는 강력

4) L.W. Beck, p. 31.

한 욕구와 충동에 의해 더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우리는 더이상 행위자로 불리울 수 없으며,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 그런 결정과 선택이 불가능한) 고정된 역할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연출하는 드라마 속의 배우와 같으며, 물리적 사물의 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움직여지는 동물과 달리, 인간의 행동은 충동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숙고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된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충동과 그에 상응하는 반응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다. 이를 Beck은 “자극의 의미” 또는 “충동의 의미”로 부르면서<sup>5)</sup> 학습의 한 과정으로 간주한다. 그의 예에 따르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불안으로 시작되는 것이 예컨대 갈증으로 분류되고 인지되어서 어떤 행위가 그런 불안과 욕구를 진정시키는지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물론 이런 개념은 내적인 충동을 일정한 반응에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의 과정에서 생긴다. 이런 과정이 동물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에 있어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충동과 가능한 반응들을 확인하고 분류하며, 각각의 종류의 욕구들에 가장 효과적인 반응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실적 지식을 획득하려는 의식적인 지적 노력이 일어난다. 이 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충동적인 요인보다 지적인 숙고와 탐구가 우선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며, 이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리 그 행위에 있어서 어떤 개념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적 존재의 이와 같은 모습도 관찰자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정한 행위의 의미에 적용되는 습관과 성벽에 대한 심리학적 법칙을 정립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개념에 따라 행동하는

5) L.W. Beck, p. 33.

행위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설명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은 더이상 지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법칙에 의해 움직여지는 피동적인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그런 법칙이 행위자에게 알려져 있느냐 알려져 있지 않았느냐는 여기서 무관한 것이다. 자연적인 사물들이 자연법칙에 따르기 위해 자연법칙을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위자는 그런 법칙을 선택해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예증하는 존재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적 존재로서의 행위자는 그런 법칙 또는 개념, 말하자면 하나의 삶의 방침과 행동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자신의 행위를 숙고할 수 있는 지적 행위자는 그런 숙고의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행위가 충동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면, 그가 고려하는 여러 행위들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런 행위들 중에서 선택하기 위한 규칙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연적 사물과는 달리 지적 행위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그런 개념이나 규칙의 건전성이다. 그런 개념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찰자에 의해 기대되는 예측된 행동의 착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의 행위에서 문제되는 것은 행위의 이런 개념적 인지적 요소이다. 물론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 즉 개념과 규칙, 삶의 방침에 따라 숙고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측면에서이다. 따라서 도덕적 존재는 우선적으로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개념과 규칙, 또는 삶의 방침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존재는, 칸트의 표현에 의하면 <법칙에 대한 표상>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 즉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즉 도덕적 존재는 항상 이성적 행위자로서 의지의 합리적 개념적 요소가 행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존재이다.<sup>6)</sup>

### 3. 의지의 합리성과 법칙

6) L.W. Beck, p.37.

이제 우리는 도덕적 존재가 곧 이성적 존재라고 한다면, 칸트가 어떻게 의지의 합리성을 보여주며, 도덕적 존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의지의 합리성에 기초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는 순서가 되었다.<sup>7)</sup> 이는 우선적으로 의지와 개념 또는 법칙의 관계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원론의 제 3장 서두에서 의지를 이성적인 한에서의 살아있는 존재에 속하는 원인성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외적인 원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특징지운다.<sup>8)</sup> 이런 규정은 “이성적 존재가 자신의 법칙의 개념에 따라서, 즉 원리에 따라서 행위하는 능력”<sup>9)</sup>으로서의 의지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의지를 이성적인 존재가 현상계에서 어떤 외적 원인과도 독립적으로 결과들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의지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산출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의지는 어떤 결과도 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의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떤 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이성적 존재는, 그가 실제로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해도, 의지를 소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할 능력은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sup>10)</sup>

이처럼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으로서의 의지는 특별한 종류의 인과성임을 주의해야 한다. 즉 그것은 자연적 필연성 하에서의 결과의 산출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위하는 것이 단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모든 자연적인 인과적 행위도 의지의 산물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칸트는 의지의 독립적인 행위능력의 특성을 자연적 필연성과 구별하여 자유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성적

7) <실천이성비판>은 도덕의 합리성을 확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이성의 사실”로 선언되며, 이성적 의지가 자유롭다(<원론>의 전체)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지만 Hill 에 의하면, 이와 달리 <원론>에 비해 <비판>의 이런 전체와 결론의 전도는 원래 한가지 계획(도덕적 행위의 합리성)의 다른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Thomas E. Hill, Jr., Kant's Argument for the Rationality of Conduct", Pacific Philosophical, vol. 66, Nos. 1 & 2 (1985), p.5

8)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Riga, 1786), s.305-6.

9) I. Kant, Grundlegung, s.270.

10)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Harper & Row, 1967), p.208

행위자의 의지가 자유라면, 그것의 작용을 외적인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지의 특성으로서의 자유는 의지가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정됨이 없이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일 경우에 존재한다.

칸트는 바로 이와같이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 것을 의지의 소극적 자유라 하고, 의지의 자율 즉 도덕의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소극적 자유로부터 적극적 자유에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그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인과성의 개념이 법칙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자유가 무법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법칙(물론 자연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다)임을 주장한다.<sup>11)</sup> 물론 그런 자유의지의 법칙은 바로 정언명령의 형식이고 도덕성의 원리이며, 도덕법칙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부과한 법칙에 따라서 인과적 행위를 일으키는 자유의지의 자발성이 바로 자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자율의 원리 하에서 행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편적 법칙으로 의욕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자유의지와 도덕법칙 하에 있는 의지는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sup>12)</sup>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실천법칙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그런 법칙은 이성적 행위자의 준칙에 합법칙성의 형식적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이어야 하고, 선형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그런 법칙에 규정 근거를 둘 수 있다고 주장한 후에, “의지가 자유롭다면, 그것을 필연적으로 규정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이런 문제의 해결은 실천원리의 형식(보편성, 합법칙성)과 실질(욕구대상, 목적)의 구별을 이용한다. 그래서 형식상 자유로운 의지는 실천원리의 실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경험적 조건에서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의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어떤 법

11) I. Kant, Grundlegung, s.305-6.

12) Kant, Grundlegung, s.306

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준칙 속에 포함되는 한에서의 입법적 형식이 자유의지의 규정근거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칸트는 “자유의지와 무조건적 실천법칙은 상호적으로 서로 함축하는 관계에 있다.”<sup>13)</sup>고 말한다. 그러나 이 논증은 의지가 자유롭다는 전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와 무조건적 실천법칙의 실재성에 대한 어떤 주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실천법칙과 도덕법칙(보편성의 원리)이 동일시 될 경우, “의지 자유가 전체되면 도덕법칙은 분석적이다”<sup>14)</sup>라는 결론에로 나가게 된다.

도덕법칙과 자유 의지의 상호적인 함축관계에 대한 칸트의 전체 논증은 다음과 같다.<sup>15)</sup> (1) 일종의 인과성으로서의 의지가 법칙에 지배되어야 하며, <비판>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법칙에 따라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무법칙적 의지는 불합리하다). (2) 자유로서 의지는 자연법칙에 지배될 수 없다. (3) 따라서 다른 종류의 법칙, 자기 부과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4) 도덕법칙은 요구되는 자기 부과적 법칙이다. 자유와 결정론의 양립을 주장하는 자는 (2)와 (3)을 부정하겠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1)과 (4)이다. 비양립론자의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법칙에 지배되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자기부과적 법칙에 의해서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 적극적 개념(자유)이 소극적 개념(독립)으로부터 분석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법칙 개념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면서도 자유 의지가 법칙에 지배되며 규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논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유 의지가 자기 부과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정해도, 도덕법칙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도덕형이상학

13)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Verlag von Felix Meiner, 1974), S. 34.

14) I. Kant, Grundlegung, s. 306

15) Henry E. Allison, "Morality and Freedom: Kant's Reciprocity Thesis", The Philosophical Review (1986, July), p.398.

원론」만을 고려하면, 단순히 자율의 원리를 도덕의 최고 원리로 생각 하므로서 문제를 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의해 쉽게 자유 의지가 자기 부과적 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이라는 주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부과 되는 법칙은 도덕법칙이라는 주장에로 나가게 된다.<sup>16)</sup>

만일 도덕법칙이 유일하게 생각될 수 있는 실천법칙이라면, 결과적으로 자유의지가 필연적으로 실천법칙에 종속된다는 주장과 그것이 필연적으로 도덕법칙에 종속된다는 주장은 동일하다. 칸트의 정의에 의하면, 실천법칙은 객관적,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실천 원리이다. 실천 원리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은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그들이 지지하든 안하든, 주관적으로 (준칙으로서) 채택하든 안하든,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에게는 그런 원리는 똑같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 명령은 그 객관성이 어떤 목적이나 욕구에 의존하면 가언적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언적이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실천 원리는 또한 그것이 어떤 목적이나 욕구에서도 독립적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타당하다. 그런 원리로부터 나오는 명령은 그 문법적인 형식이 어떠하든, 항상 정언적이다. 따라서 칸트는 (1) 그런 법칙은 (원리의 실질을 구성하는) 모든 목적과 욕구로부터 추상되어야 하므로, 형식적이어야 하고, (2) 그 자체로서 그것은 오직 이성적 존재가 그들의 준칙을 보편법칙에의 적합성을 기초로 선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도덕법칙 또는 정언명령이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문제는 자유와 무조건적 실천법칙이 서로 상호적으로 함축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한 논증의 첫단계는 무법칙적 의지라는 관념의 불합리성에 대한 명제이다.<sup>17)</sup> 칸트는 의지를 법칙의 표상 또는 원리에 따르는 능

16) H.E. Allison, p. 399.

17) 이것은 인과성과 법칙 사이의 어떤 필연적인 연결에서 도출되는 견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법칙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에 의해서만 지배되며 따라서 자유라고 서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CF. Paton, p.211

력으로, 그러면서도 일종의 인과성으로 규정한다. 또한 일반 원칙을 형성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을 의지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한다.<sup>18)</sup> 따라서 의지는 일반적인 원칙을 형성하고 또한 그 원칙을 토대로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두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의지를 가진다. 그런 존재는 이성이 실천적이 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여기서 의지에 의해 형성되고 그 의지가 따르는 일반 원칙이 비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의미에서 비합리적이라해도, 그 행위자는 이성적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sup>19)</sup> 왜냐하면 원리들이 행위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단순히 왜 육체가 움직였는가와는 달리)에 대한 설명에 경험적으로 관찰할수 있는 사건들의 유형 속에 있는 규칙성으로서가 아니라 행위자를 인도하는 표상 또는 합리적 근거로서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성적 행위자가 행동하는 기초가 되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 또는 법칙에의 표상이 준칙이다. 준칙은 이성적 행위자가 어떤 상황에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따르는 일반적인 규칙 또는 방침으로서 주관적인 원리이다. 이런 원리는 <A라면 B를 한다>는 형식을 지닌 것으로, 행위자의 어떤 목적 관념을 포함한다.<sup>20)</sup> 즉 어떤 목적을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도록 계획된 행위의 방침을 채택하는 것이다. 도덕법칙을 위한 행위의 경우에서 처럼 순수한 경우에도 준칙에서 목적 관념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런 목적 관념은 준칙을 형성할 때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의식될 필요는 없다. 이 점을 간과할 때,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준칙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준칙의 개념을 확장시켜 <의도>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sup>21)</sup>할 경우, 인간의 대부

18) H. E. Allison, p.400-1. cf. L.W. Beck, p.39

19) Hill에 의하면, 도덕적 행위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데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비도덕성이 행위자의 공언(이것이 이성에 의해 독립적으로 요구되었든 아니든)과 감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 행위자 자체가 필연적으로 하나의 원리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칸트가 양자를 다 의도했다고 생각한다. Thomas E. Hill, p.6-7 note 22.

20) H. E. Allison, p.401

21) 이 입장은 Onora Nell 의 견해이다. H.E. Allison, pp.402-3. 참조

분의 행동은 준칙에 의거한 행동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런 해석은 단지 행위자가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 즉 그 행위에 대한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런 해석에 의하면, 준칙을 형성하는 것은 그런 의도를 서술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행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의지가 규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종류의 행동을 하려는 의도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행위자가 <B라면 A를 한다>는 준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B라면 A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B라면 A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B라면 A를 한다는 준칙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우리가 준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얼떨결에> 수행된 많은 행위들도 준칙하에 있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어떤 종류의 의도를 귀속시킬 수 있는 한, 그가 반성적으로 그의 의도를 정식화하지 않는다해도, 준칙을 그의 행위에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의도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 한, 그 행위는 의도적 행위이며, 의지의 산물이다. 물론 아무런 의도도 귀속시킬 수 없는 행위는 의지의 작용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행위는 말하자면, 제멋대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행동이며, 어떤 외적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만 간주될 수 있다. 그런 행동은 다른 자연적인 사건들처럼 법칙에 일치해서 일어나겠지만, 이성적인 행위자의 행위처럼 법칙에 대한 표상에 일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의도도 없는 의지의 관념은 불합리하며, 마찬가지로 준칙이 없는 의지의 관념도 불합리하다.

이러한 분석은 이성적인 행위자가 법칙에 대한 표상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칸트의 주장 즉 의지의 합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성적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지가 어떤 법칙에 지배된다는 주장을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주관적

인 원리로서의 준칙과 객관적인 원리로서의 실천법칙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적 행위자의 의지가 준칙에 지배된다는 것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실천법칙 하에 있다는 주장은 도출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자의 의지가 준칙에 지배된다는 의미에서의 행위자의 합리성을 토대로 도덕을 도출할 수는 없다. 바꿔 말해서 인간이 이성적 행위자라는 사실에서 곧 도덕적 존재라는 점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Allison은 도덕적 행위의 정당화의 측면에서 의지의 준칙과 무조건적 실천법칙의 관계가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행위자의 준칙을 정식화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O. Nell의 견해를 기초로 해서,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도덕적 정당화의 측면으로 해석할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sup>22)</sup>

그에 의하면, 정당화는 3 단계로 이루어 지는 데, 우선 첫째는 도덕적인 행위에서든 사려적인 행위에서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의도)가 <좋은 이유>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이유가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라는 의미에서 <좋다>는 것을 주장할 때, 우리는 암암리에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 대한 그것의 적합성을 가정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단순히 R이라는 이유가 상황 C에서 나의 행위 X를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다른 행위자의 행위 X도 정당화한다는 생각을 포함한다. M. Singer는 Sidgewick의 말을 바꾸어 “한 경우에서의 이유는 모든 경우에서의 이유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유라고 할 수 없다.”<sup>23)</sup>고 한다. 물론 어떤 이유가 나에게만 옳고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행위 상황에 독특한 어떤 것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22) H. E. Allison, pp.405-6

23) Marcus Singer, Generalizations in Ethics, p.57, H. E. Allison, p.406에서 재인용.

의도나 준칙을 보편화하는 것은, 비록 그 이유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해도, 행위를 정당화하는 조건의 하나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행위자는 정당화의 문제,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가 적어도 도덕과 무관한 의미에서 <좋은> 이유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은 그 행위자가 항상 좋거나 충분한 이유를 토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정당화의 문제에 무관계하다고 하는 행위자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의 이유가 좋은 이유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행위자, 도대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문제삼지 않는 행위자는 이성적인 행위자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3 단계의 정당화 과정에서 행위자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대한 이유가 어떤 의미로든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 유사한 상황에서는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 대해 그 정당성을 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성적 행위자는 자신의 합리성을 부정함이 없이는 보편화의 시금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것은 보편화의 시금석이 우리의 준칙에 대한 선택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표준으로 기능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법칙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원리를 다른 모든 이성적 행위자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그 원리를 채택하리하는 것을, 또는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명제에서부터 다른 모든 이성적 행위자들이 (보편적 법칙으로서) 그 원리를 토대로 행동할 것을 마땅히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로 나갈 수는 없다.<sup>24)</sup> 다시 말해서 행위자의 의지가 보편화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에만 도덕을 기초지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의 증진을 위해 행동하는 준칙을 행위에 대한 좋은 이유로 삼는 이성적인 이기주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는 또는 보편화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준칙을 다

24) Richard Norman, *The Moral Philosopher: An Introduction to Ethics* (Oxford: Clarendon Press, 1983), p.116-7 참조

른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이기주의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전히 보편화의 원리라는 합리성에만 도덕이 의거한다면, 이기주의적인 준칙도 또한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도덕을 다른 모든 이성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마땅히 의욕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한다면, 이기주의적 준칙은 도덕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기주의자가 다른 모든 이성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준칙을 행위 원리로 채택하기를 자기 모순을 범함없이 의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으로부터 보편적 의욕 가능성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 보편적 실천법칙에의 표상이라는 합리성의 개념으로부터 도덕적 행위자의 관념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Allison에 의하면, 이런 잘못된 시도의 근거는 도덕법칙이 이성적 존재 자체에 대한 일반 개념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하는 칸트의 잘못된 주장에 있다고 한다.<sup>25)</sup> 칸트에 의하면 의지 자유가 전제될 때, 도덕법칙은 분석적이 된다. 그러나 자유로부터 도덕성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법칙이 되고, 또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한 도덕성이 자유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특성임을 증명해야 한다.<sup>26)</sup> 그러나 그런 증명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경험에 호소하므로서 증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경험은,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단지 사실만을 제공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자와 자유 사이의 필연적 연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의 연속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도 자유가 아니라 자연적 필연성이거나 아니면 혼란스런 우연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Paton은 칸트가 자유의지를 증명하려

25) H. E. Allison, p.407.

26) "도덕성은 다만 자유의 속성에서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 또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속성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Kant, Grundlegung, s.307.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라고 한다.<sup>27)</sup>

그러므로 Allison은 칸트의 그러한 주장은 단순히 경험적 지식에 의거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지, 도덕성이 이성적 존재에 대한 단순한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칸트 자신은 도덕법칙을 이런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럴 가능성도 거부했다.<sup>28)</sup> 그러면서 그는 그 근거로서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보이는 귀절을 인용하고 있다. 즉 <한 존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이성이 보편법칙으로 될 수 있는 그 준칙에의 적합성을 표현하므로서 의지를 무조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즉 그 자체 실천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도덕을 단순한 의지의 합리성으로부터 도출하려는 시도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나, 불완전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도덕적 존재의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의지의 합리성 이외에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그 개념은 준칙에 지배되는 의지(합리적 의지)와 법칙에 지배되는 의지(도덕적 의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 4. 의지의 법칙과 자율

지금까지 우리는 행위자가 이성적인 한에서 그의 의지는 무법칙적일 수 없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보편적인 무조건적 실천법칙에 지배되어야 한다는 의지의 합리성을 드러낼려고 했었다. 이 점은 합리성으로부터의 논증이라 불리우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그런 논

27) H. J. Paton, p.212

28) H. E. Allison, p.408. 여기서 Allison은 칸트의 분석의 출발점이 단순히 이성적 존재자의 개념이 아니라, (선형적 의미에서) 자유 의지를 가진 이성적 존재에 대한 개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재 논점이 아니다.

중은 의지가 도덕법칙에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했다. 그것은 단지 도덕법칙이 유일하게 생각될 수 있는 무조건적 실천법칙이라고 가정할 때만, 이성적 존재라면 곧 도덕적 존재라고 생각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성적 행위자의 자유 의지가 지배되는 무조건적 실천법칙이 도덕법칙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즉 자유 의지는 도덕법칙 하에 있는 인과성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칸트는 의지를 일종의 인과성으로 규정하면서, 인과성이 자연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든 아니든 간에 인과성의 개념이 법칙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aton은 이런 주장의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한다. 칸트는 인과성의 개념이 법칙의 개념을 포함하며, 그 법칙에 따라서 원인이란 것을 통해 어떤 다른 것, 즉 결과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필연성이 아니라 자유로 특징지워지는 인과성도 무법칙적일 수 없고 특별한 종류의 불변적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법칙은 같은 원인들은 필연적으로 같은 결과들을 가지도록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자연적 필연성에서만 적용된다. 이로부터 어떻게 자유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고려되는 인과적 행위를 위한 법칙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Paton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자유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 연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29)</sup>

자연적 필연성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그런 법칙에 의한 인과적 행위는 행위자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 외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므로 그것을 자유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유 의지가 무법칙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 의지가 따르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는 다른 종류의 법칙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문제는 자연의 법칙과 자유의 법칙이라 불리

29) H. J. Paton, p.211

우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인과적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은 사실 스스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과 자유의 법칙을 구별하려 한다면, 자유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 부과한 법칙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자유의지의 자발적인 인과적 행위는 스스로 부과한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가 자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의지의 자율은 “의지가 (의욕의 대상에 속한 모든 속성과는 무관하게) 그 자신에 대해 법칙이 되는 의지의 속성”<sup>30)</sup>이다. 이런 규정은 그 자체로 명백한 것은 아니나, 자율을 지닌 의지는 소극적으로 자유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성적인 원리에 복종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sup>31)</sup>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성적 원리에 따르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과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의 욕구된 목적에 대한 필요한 (최선의) 수단을 단순히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인정하는 합리성은 우리가 욕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나에 대한 또는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이 무엇이나에 대한 우연적인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 또는 우리 자신에 의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외적 권위나 전통, 인습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소극적으로) 자유로운 행위자로서의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부터의 깊은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다. 의지의 자율에 대한 이 모든 함의는 자율성을 지닌 의지가 어떤 욕구나 외적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이성적인 강제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극적 자유는 <외적 원인의 규정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지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유 의지의 활동에 대한 경험적인 인과적 설명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만일 우리의 욕구와 경향성을 만족시키는 행동의 경우, 그 때의 의지가 자유로운지는 경험적으로 알려지

30) I. Kant, Grundlegung, s.299.

31) Thomas E. Hill, p. 11-2

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행위자의 의지는 욕구와 경향성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자유의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의지의 “실질이 실천법칙의 가능조건으로서 실천법칙 안에 들어온다면, 그 때문에 의지의 타율 즉 어떤 충동이나 경향성에 따르는 자연법칙에의 종속이 나타난다.”<sup>32)</sup> 바꿔 말해서 “의지가 보편적 입법에의 자신의 준칙의 적합성 이외의 다른 곳에서, 즉 의지가 자신을 넘어서서 그것의 대상의 어떤 성질 중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법칙을 찾는다면, 항상 타율이 나타난다. 그 때 의지는 자신에게 법칙을 부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상이 의지와외의 관계를 통해 의지에게 법칙을 부여한다. 그 관계는...오직 가언명법만을 가능하게 한다.”<sup>33)</sup>

가언명령 하에 있는 의지는 의지의 자기부과적 법칙이 아니라, 대상이 의지에게 법칙을 부과하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타율적 의지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가언명령이 아니라 정언명령에 복종해서 행동하는 한에서만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 (의무 자체를 위해 수행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순수 실천이성의 자율적인 활동에 있어 감각적 경향성의 관여가 우연적으로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자유 의지가 도덕법칙에 지배된다는 것은 마치 자연 현상이 자연법칙에 지배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되고, 자유 의지는 떨어지는 돌맹이가 중력 법칙을 위배할 수 없는 것처럼 도덕법칙을 위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만일 도덕과 무관하거나 타율적인 의지가 자연법칙에 종속되는 것이라면, 이미 비도덕적인 의지가 어떻게 도덕적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비도덕적 행동이나 도덕과 무관한 행동에 대해, 즉 타율적 의지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된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칸트가 자연과 자유를 구별하고, 의지의 자유를 도덕법칙에의 종속으로 정의하고 있

32) I. Kant, K.d.p.V., S.39

33)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rsg. von Wilhelm Wekschedel (Shrkamp, 1956), Bd. VII, s.75-6

다면, 비도덕적 또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그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sup>34)</sup>

정언명령에 복종해서 행동하는 한에서만 자유롭다고 해석하게 되면, 의지는 실천이성이고 따라서 이성에 반한 것은 어떤 것도 의욕할 수 없게 된다. 도덕은 이성에 의해 규정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도덕적이라고 의욕할 수 없게 된다. 또는 항상 선인 의지는 소극적으로 자유로우며 자율성의 법칙에의 완전한 일치를 의욕한다. 이런 견해에 의하면, 도덕에 반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행동하는 자, 심지어 도덕과 무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자도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는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행위는 자연적 사물이나 동물의 행동처럼 자연적 힘의 산물이다. 우리는 때로 자유롭게 인정된 이성적 도덕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때로는 이성적 통제를 넘어선 자연적 힘에 의해 지배되는 이상한 잡종이 될 것이며, 무엇이 우리를 이쪽에서 저쪽 양식으로 바꾸게 하는지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런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욕구로 부터 행동할 때, 우리는 타율적으로 행동하며, 그것을 부자유하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도덕적 원리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유롭고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두가지 사이에는 자유로운 선택이란 없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선택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해석의 근거를 자유의지와 도덕법칙 하에 있는

34) 이 점에 대해 Reinhold는 하나의 딜렘마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도덕법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 개념이 이성의 자기활동성에 대한 개념이라면,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가정되는) 능력은 무능력이거나 불가능한 것이다. 반면 자유가 인격의 자기결정 능력이라면,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능력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도덕적 행위가 생각될 수 없는 그런 동일한 가치를 가진 능력이다. 즉 본래적인 자유의 개념은 전적으로 도덕과 무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Reinhold의 생각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도덕법칙에 대한 우리의 의식에서 자유의 개념이 도출된다는 칸트의 주장과 반대된다. (H.E. Allison, p.421-2) Allison에 의하면 G. Prauss(Kant über Freiheit als Autonomie, pp.60-115)도 유사한 입장이 라고 한다. (H.E. Allison, p.418. note 50)

의지는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라는 「도덕형이상학원론」의 귀절과 자연법칙과 자유법칙의 유비, 그리고 <자율적인 행동> = <자유로운 또는 도덕적인 행동>, <타율적인 행동> = <인과적으로 결정된 행동 또는 적어도 욕구나 경향성에 의해 동기지워진 행동>, 즉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일치한 행동이라는 등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35)</sup> 그렇지만 이것이 칸트의 진정한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율에 대한 칸트의 두가지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36)</sup> 생명이 없는 사물의 경우 타율은 그것이 완전히 외부로부터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경우(자발적이며 도덕적인 행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대상이나 다른 것의 특성에서 자신을 결정하는 법칙을 추구한다. 이런 경우 타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는 결코 감각적 동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거나 강요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것에 의해 느낌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동물의 경우는 외적인 것에 의해 단지 느낌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고 강요된다. 이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도덕과 무관한 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의 타율에 있어서도 자유와 양립가능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Hill도 칸트가 행위자의 욕구를 <외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그런 외적 요소에 의한 의지의 규정을 결정론적 인과관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한다.<sup>37)</sup> 그래서 예컨대, 반사적 기지개의 경우처럼 경향성에 의해 의지가 규정된다고 볼 수 있을 때, 이것은 행위자의 방침, 또는 이유가 그런 경향성을 만족시키는 수단에 관한 가언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이를 외적 원인에 의한 의지의 규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말하자면 행위자의 경향성이 그가 행한 것을 의욕하도록 결정론적으로 원인지워준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선택된 방침이 어떤 인과적 관계를 또는 인과적 관계에 대한 그의 신념을 그가 행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

35) I. Kant, K.d.p.V. s.39

36)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p.214-5

37) Thomas E. Hill, p.10

로 만든 것이다. 그의 신념 또는 이유(인과적 사건이 아니다)는 <나는 나의 경향성 B를 만족시킬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A는 B를 만족시킬 수단이다, 고로 나는 A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행위자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인과적 관계 (또는 그것에 대한 믿음)를 그의 선택의 결정적인 요소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구별, 즉 자신의 경향성에 의해 행동하도록 원인이어지는 것과 경향성의 충족을 위한 방침을 이성적 근거로 삼아 행동하는 것 사이의 구별은 중요하다. 이런 구별에 의해 비록 인과법칙이나 선행하는 사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의욕마저도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롭게 의지할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그런 능력은 이성에 따라 행위하고 의지할 능력으로서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구별에서가 아니면, 소극적인 자유의지가 자율성을 가진다는 논증은 실패한다.<sup>38)</sup> 왜냐하면 자율성은 욕구에 기초한 가언명령 이외의 다른 원리에 따르는 성향 또는 능력을 아울러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도덕법칙에 (의해 지배되거나) 종속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유일한 형식적 원리(도덕법칙으로 동일시되는 것)가 필연적으로 자유의지를 규정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한다.<sup>39)</sup> 일견해서 도덕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물리적 대상이 자연법칙에 종속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법칙으로부터의 일탈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러나 칸트가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유 의지에 대해 법칙과 같은 지위를 지니는 것을 의미하므로, 칸트가 여기서 주장하는 모든 것은 유일한 형식적 원리(도덕법칙)가 자유의지에 대해 그런 능력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0)</sup>

따라서 문제는 이런 능력으로 의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무엇이

38) Thomas E. Hill, p. 11.

39) I. Kant, K.d.p.V., s.34.

40) H. E. Allison, p.420

포함되는지 보이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도덕법칙이다. 왜냐하면 가언명령에 따르는 것도 자율이지만, 가언명령은 <필연적으로> 의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도덕법칙만이 이성의 법정 앞에서 자유 의지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규범이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인 실천원리는 의지의 규정근거로서 욕구의 대상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 의지는 (정의상) 그 목적으로서 그런 대상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덕법칙이 자유의지를 위한 기준이나 규범이라는 사실로부터 의지가 그런 규범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법칙은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 해도, 주관적으로는 우연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타율적으로 행동하며, 우리의 선택을 기초로 우리의 욕구를 자유롭게 만족시킬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칸트의 도덕 이론에 의하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엄한 또는 본래적인 자아를 단순히 우리의 저급한 또는 감각적인 본성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우리 자신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의 남용은 여전히 자유의 활동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sup>41)</sup>

사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Wille 와 Willkür를 구별하면서, 목적 일반의 채용과 확실히 비도덕적 준칙의 채용이 원칙적으로는 이성적 선택이 아니지만, 이성적 행위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sup>42)</sup> 즉 자발성으로서의 Willkür가 Wille의 명령 (의무의 요구)에 일치해서 행동하도록 자신을 결정하거나, 또는 이런 명령을 경향성의 요구에 종속시키는 데 자유롭다는 것이다. <도덕형이상학>의 서론에서도, 칸트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그 자체 실천적일 수 있는 순수 이성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나서, Wille와 Willkür를 구별하고, Wille는 행위보다는 입법을 다루므로 자유롭거나 부자유한 것으

41) H. E. Allison, p.420

42) Thomas E. Hill, p. 8.

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자체 실천적이 되는 이성의 힘>, 즉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는 능력, 법칙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은 자유로운 행위자가 이 법칙의 명령에 복종할 능력을 포함한다. 이것이 칸트가 도덕법칙을 통해 우리가 어떤 감성적 규정근거에 의해 행위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속성으로서의 자유를 자각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sup>43)</sup> 그러므로 자유는 그 자신의 자기부과적 법칙에 따를 의지의 능력으로 이해된다. 그 법칙은 감성적 규정근거에 의한 강제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다. 자유는 Wille의 명령에 복종할 Willkür의 능력으로서 이해된다. 또한 그런 능력의 소유가 완전히 그것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칸트는 도덕법칙 하에 있는 의지와 항상 도덕법칙에 따르는 의지를 구별한다.<sup>44)</sup> 도덕법칙 하에 있다는 것은 정언명법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그것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관적으로는 우연적이다. 칸트는 실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아마도 인간이 완전한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귀속되는 능력) 즉 타율적인 의지는 실로 무능력이며, 따라서 부자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것처럼 쓰고 있기도 하다.<sup>45)</sup> 그렇지만 이성적 존재는 소극적 자유를 가진 존재이며, 소극적 자유를 가진 존재는 또한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 칸트의 근본적인 생각이다. 이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의지의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자율적일 수 있는 자유의지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지는 법칙에 복종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의지가 스스로 입법자가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다.”<sup>46)</sup> 따라서 실제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부자유와 타율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의지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마치 인간의 의지가 그러한 것처럼 행동하는 자, 즉 자율성을 지닌

43) H. E. Allison, p. 422

44) H. J. Paton, p. 213.

45) Reinhold와 Prauss는 이런 실패가 그 자체 자유의 표현이라고 본다.

46) I. Kant, Grundlegung, (Suhrkamp, 1956), s.63-4

의지가 가진 함의를 무시하고 마치 유일한 이성적 근거가 가언명령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일 뿐이다.

## 5. 결론

도덕적 행위는 이성적 행위라는 칸트의 주장은 인간의 행위에 적용될 때, 도덕적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즉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이성적이며 따라서 도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고찰에 의하면, 이성적 행위자는 행위의 일반원칙을 형성하고 그 원칙에 따르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런 존재의 원인성 즉 의지는 무법칙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성립되는 일반 원칙 또는 법칙의 표상에 따라 욕구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의지의 실천 법칙만이 이성적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모든 이성적 행위는 일정한 실천법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행위의 일반원칙이 행위자를 인도하는 표상 또는 근거로서 도입되고 있다는 것은 행위의 합리성을 보여줄 수는 있다해도, 그것의 도덕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다. 다시 말해서 행위자의 의지가 일반원칙 또는 실천법칙에 지배된다는 의미에서의 행위의 합리성이 이성적 행위자가 곧 도덕적 행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일 이성적 행위가 규정되는 실천법칙이 보편적 도덕법칙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성적 존재는 곧 도덕적 존재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칸트는 인과적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과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을 대비시키고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자기부과적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자기부과적 법칙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 또는 의지의 특성을 칸트는 자율이라 부른다. 의지의 자율은 <의지가 그 자신에 대해 법칙이 되는 의지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율적 의지는 우선적으로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이며, 따라서 외적 원

인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자유인 의지가 확립시키는 자기부과적 법칙이 곧 도덕법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가? 이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성적 행위자는 자기부과적인 도덕법칙에 따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문제는 칸트의 윤리학에서 그리 명료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경향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원인이 지어지는 것과 경향성의 충족을 위한 준칙을 이성적 근거로 삼아 행동하는 것 사이의 구별, 그리고 욕구에 기초한 가언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정언명령에 복종하는 것 사이의 구별에서 자율을 오직 정언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자율만이 자유이고 모든 타율은 부자유로 간주해야 하며, 이에 따라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능력은 인간에게 불가능하게 되거나, 아니면 인간은 전혀 도덕적이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법칙 하에 있는 의지와 항상 도덕법칙에 복종하는 의지에 대한 칸트의 구별과 더불어 타율의 두가지 의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항상 도덕법칙에 복종하는 의지는 비감성적이고 오직 이성적인 존재에게서만 볼 수 있다. 인간은 감성적이며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지는 항상 도덕법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타율적으로 욕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타율적 행위는 자연적 필연성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렇게 볼 때, 도덕법칙에 복종할 때만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때에도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자율적 의지의 이성적 근거를 오직 가언명령에서만 구하는 것으로서 자율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위자는 오직 이성적이기만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 확립되는 자기부과적 법칙을 행위의 이성적 근거로 삼아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때문에 비록 항상 도덕적으로 행위하지 않는다해도, 자유의 이념 하에서 행위할 수 있는 한, 그런 존재는 도덕적 행위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Verlag, 1956)
-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Verlag von Felix Meiner, 1974)
-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Riga, 1786)
-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Frankfurt: Suhrkamp Verlag, 1956)
- I. Kant,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Frankfurt: Suhrkamp Verlag, 1956)
-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
- Henry E. Allison, "Morality and Freedom: Kant's Reciprocity Thesis", The Philosophical Review (1986, July)
- Herry E. Allison, "Practical and Transcendental Freedom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Kant-Studien, 73 Jahrgang, Heft 3 (1982)
- Carl J. Friedrich ed., The Philosophy of Kant (The Modern Library, 1949)
- Richard Norman, The Moral Philosopher: An Introduction to Ethics (Oxford: Clarendon Press, 1983)
- Richard Taylor, Metaphysic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63)
- Thomas E. Hill, Jr., "Kant's Argument for the Rationality of Conduct", Pacific Philosophical, vol. 66, Nos. 1 & 2 (1985)
-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Harper & Row, 1967)
- Roger J. Sullival, Immanuel Kant's Mor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